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용석 의원(도봉)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88
----------	------

발의년월일 : 2016년 12월 26일
발 의 자 : 김용석(도봉)·박진형·문형주·
권미경·최영수·박기열·장인홍·
한명희·유찬중·유 용·김정태·
문영민·강성언·김진철·김문수·
김인호·맹진영·이병해·이정훈·
김동율·오승록·김제리·김인제·
이현찬·신원철·조상호·김종욱·
장홍순·박양숙·김광수(도봉)·
문종철·김미경·김경자(양천)
의원(33명)

1. 제안이유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기념사업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등이 시행되고 있으나 관련 사업을 보다 명확하고 상세히 규정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 →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기념사업을 시행·지원하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를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5조 4호를 삭제하고,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기념사업 등) ① 시장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2.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조형물·동상 등 기념물 설치·지원 및 관리 사업
 3.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4.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교육·홍보 및 학예활동
 5.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제교류 및 공동조사 등 국내외활동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시장은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u></p> <p>제5조(지원 사업) 시장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p> <p>1. ~ 3. (생략)</p> <p>4. <u>기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홍보 및 연구 사업, 명예 회복 활동 사업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u></p> <p><u><신설></u></p>	<p style="text-align: center;"><u>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u></p> <p>제5조(지원 사업)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삭제></p> <p><u>제5조의2(기념사업 등) ① 시장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u></p> <p><u>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u> <u>2.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조형물·동상 등 기념물 설치·지원 및 관리 사업</u> <u>3.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u> <u>4.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교육·홍보 및 학예활동</u> <u>5.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제교류 및 공동조사 등 국내외활동</u> <u>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u></p> <p><u>② 시장은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u></p>